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목 차>

1. 개인정보의 전송요구에 관한 사항
2.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3. 결합전문기관 지정 및 관리감독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소관부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작 성 자	이름	윤혜원
	담당부서 (과)	법정부 마이데이터 추진단		직급	행정사무관
	국장	이상민		연락처	02-2100-3172
	과장	황지은		이메일	noweyh@korea.kr

2024. 04. 25. 작성

정책 책임자 직위

성명 (서명)

< 규제 개요 >

기본 정보	1.규제사무명	개인정보의 전송요구에 관한 사항		
	2.규제조문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제42조의2~제42조의7, 제42조의12, 제42조의13, 별표 1의2		
	3.위임법령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의2, 법 제35조의4		
	4.유형	신설	5.입법예고	2024.5.1~2024.6.10
규제의 필요성	6.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국민의 적극적 프라이버시 권리를 보장하고 기업·기관별 칸막이에 가로막힌 데이터를 정보주체 의사에 따라 융합하여 데이터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해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도입(「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23.3.14) ○ 개인정보의 전송요구권을 안정적·체계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정보주체의 전송요구 방법, 정보의 전송방법, 전송요구의 거절 및 전송의 중단 방법 등과 관련한 기준 및 절차를 구체화하여 규정		
	7.규제내용	○ 개인정보의 전송요구권 도입에 따른 정보주체의 전송 요구 방법, 정보의 전송 방법 및 절차, 거절·중단 방법 및 사유, 관리·감독 등에 관한 사항 등		
	8.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 개인정보를 전송하거나 전송정보를 활용하는 개인정보처리자, 정보주체, 정부·공공기관 등		
	9.도입목표 및 기대효과	○ 개인정보의 전송 방법 및 절차 등을 구체화함으로써 정보주체의 전송요구권 행사에 따른 전 분야 개인정보의 전송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전송체계 구축 ○ 번거로운 서류 발급이나 행정절차 경감, 의료·통신·유통 등 다양한 영역에서 개인 맞춤형 서비스를 이용하여 편의성 증진 ○ 기업·기관별 칸막이에 가로막혔던 데이터를 정보주체의 의사에 따라 다양한 데이터와 융합하여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출하고 기업 경쟁력 강화 ○ 전송받은 정보를 활용하여 고령화재난복지 등 사회적 난제를 해결하는 데이터 기반 과학행정 실현		
규제의 적정성	10.비용·편익 분석	○ (비용) 개인정보 전송에 따른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나, 중계 전문기관을 통해 개인정보를 전송함에 따라 전송처리에 관한 실제 부담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되며, 실제 비용이 발생하더라도 수수료를 통해 전송 비용 보전 가능 ○ (편익)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전송에 따른 수수료 확보 가능, 데이터 융합을 통해 혁신적 비즈니스 창출, 국민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강화, 서류 발급 및 행정 절차 감축, 개인 맞춤형 서비스 확대,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가능		

	11.영향평가 여부	기술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중기영향평가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기타	12.일물설정 여부 등	대분류	소분류		
		일물설정 예외기준	1. 국제조약 등에 따라 동일하게 적용 되어야 하는 규제		해당
			2. 국가의 질서 유지 및 국민생명 · 안전과 직접 관련된 규제		해당
			3. 사회통념상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규범적 성격의 규제		해당
		경제규제 여부기준	4. 국민과 기업의 경제활동에 대한 규제		미해당
			5. 경제활동에 직접영향을 주는 규제		미해당
		일물설정 세부기준	6. 피규제자의 규제부담이 매우 큰 규제		미해당
			7. 한시적 목적을 위한 규제이거나 주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규제		미해당
		일물설정여부		일물조문	연장여부
		미설정			
		일물유형		일물설정기간	일물주기
	13. 우선허용 · 사후 규제 적용여부	해당없음			
	14. 비용감축 제	적용여부	비용	편익	연간균등순비용
		-	-	-	-
	15. 규제정비 계획	해당없음			

<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u><신 설></u>	<u>제42조의2(정보전송자 기준) ① 법 제35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 정보처리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본인 대상 정보전송자”라 한다)를 의미한다. 다만, 경제적·기술적으로 전송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는 제외할 수 있다.</u> <u>1.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u> <u>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닐 것</u> <u>나.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간 그 개인정보가 저장·관리되고 있는 정보주체 수가 일일평균 10만명 이상일 것</u> <u>2. 기관·법인 또는 단체 중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간 그 개인정보가 저장·관리되고 있는 정보주체 수가 일일평균 100만명 이상인 자</u> <u>3. 법 제35조의2제2항에 따른 개인 정보처리자</u> <u>4. 그 밖에 법 제35조의2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전송을 할 능력이 있다고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u>

② 법 제35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제3자 대상 정보전송자”라 한다)를 말한다.

1. 「의료법」 제3조의4에 따른 상급종합병원 및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2.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1호의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자 중 보호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3.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신판매업자 또는 통신판매중개업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요건에 해당하면서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가.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 또는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 매출액이 1,500억원 이상일 것

나.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그 개인정보가 저장·관리되고 있는 정보주체 수가 일일평균 100만명 이상일 것

<신 설>

4.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2호의 부가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요건에 해당하면서 보호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가.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 또는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 매출액이 1,500억원 이상일 것

나.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그 개인정보가 저장·관리되고 있는 정보주체 수가 일일평균 100만명 이상일 것

제42조의3(일반수신자 기준) ① 법 제35조의2제2항제2호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기술 기준을 충족하는 자”란 개인정보를 전송받아 확인하는 자(이하 “일반수신자”라 한다)로서 전송요구 관련 제반 시스템, 불법적인 접근 및 침해사고 방지를 위한 보호설비 및 기술, 전송 내역 기록·보관을 위한 시스템 등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및 기술을 갖춘 자를 의미한다.

② 일반수신자는 법 제35조의3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지정을 받지 않고 법 제35조의3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서는

<신 설>

아니된다.

제42조의4(전송 요구 정보의 범위)

① 정보주체는 법 제35조의2제1항에 따라 본인 대상 정보전송자가 보유한 개인정보로서 법 제35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개인정보에 대해 정보주체 본인에게 전송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본인 대상 정보전송자가 전송 대상 정보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정보의 전송으로 인하여 제3자의 권리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다른 법령에 따라 정보주체 본인이 제공받거나 열람할 수 있는 정보는 제외한다)
2. 복호화되지 아니하도록 일방향 암호화하여 저장된 정보
3. 전송시 본인 대상 정보전송자의 정상적인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등 본인 대상 정보전송자의 시간, 비용, 기술 등을 고려할 때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정보주체의 전송 요구에 응하기에 어렵다고 판단되는 정보
4. 본인 대상 정보전송자가 시스템 내부 관리 목적으로 보유하는 개인정보 등 명백히 정보주

체의 권리와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정보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와 유사한 사항으로서 보호위원
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

② 정보주체는 법 제35조의2제2항
에 따라 제3자 대상 정보전송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법
제35조의2제2항 각 호의 자에게
전송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호위원회는 전송받는 자에
따라 전송받을 수 있는 정보를 구
분하여 고시할 수 있다.

1. 제42조의2제2항제1호의 제3자
대상 정보전송자가 보유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건의료정보로서 보건복지부장
관과 협의하여 보호위원회가 정
하여 고시하는 정보

가. 진단내역, 처방내역, 검체·
영상·병리검사결과 등 「의
료법」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라 환자진료 등과 관련하
여 생성된 정보

나. 처방약품명과 일수, 조제 내
용 및 복약지도 내용 등 「약
사법」 제30조에 따라 조제
등과 관련하여 생성된 정보

다. 「의료기기법」 제2조에 따
른 의료기기(「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
법」에 따른 혁신의료기기를

포함한다)를 통해 생성·수
집된 정보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과 유
사한 정보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건의료 분야 기관·단체가
보유한 정보

2. 제42조의2제2항제2호의 제3자
대상 정보전송자가 보유한 기간
통신서비스 가입정보 및 이용정
보, 청구정보, 납부정보 등 「전
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간통신역무에 관한 정보
로서 보호위원회와 과학기술정
보통신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
여 고시하는 정보

3. 제42조의2제2항제3호의 제3자
대상 정보전송자가 보유한 주문
정보, 구매정보, 이용정보, 지불
정보 등 제42조의2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가 상품 또는 서비
스를 거래하거나 거래를 중개하
기 위해 처리하는 정보로서 보
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
보

4. 그 밖에 제42조의2제2항제4호
의 제3자 대상 정보전송자가 보
유한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
제12호의 부가통신역무에 관한
정보로서 보호위원회와 과학기
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

<신 설>

③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정보주체는 제2항제1호 각 목의 정보에 대해서는 제2항제1호에 따라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에 한해 정보주체 본인에게 전송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제42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보주체는 본조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제42조의2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만 법 제35조의2제1항에 따른 전송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전송 대상 정보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42조의5(전송 요구의 방법 등) ①

정보주체는 법 제35조의2제2항에 따라 전송을 요구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특정하여야 한다.

1. 전송 요구 목적

2. 전송 요구를 받는 자

3. 개인정보를 전송받는 자

4. 전송을 요구하는 개인정보

5. 정기적 전송을 요구하는지 여부 및 요구하는 경우 그 주기(제42조의8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으로 전송하는 경우에 한한다)

6. 전송 요구의 종료시점

7. 전송을 요구하는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8. 그 밖에 전송 요구에 필요한 사
항으로서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정보주체는 일반수신자, 개인
정보관리 전문기관을 통하여 제3
자 대상 정보전송자에게 법 제35
조의2제2항에 따른 전송 요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일반수신자,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은 미리 제
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정보주
체가 그 내용을 명확하게 인지하
고 전송을 요구할 수 있도록 알려
야 한다.

③ 정보주체는 법 제35조의2제2항
에 따른 개인정보 전송 요구 시
같은 내역의 개인정보를 정기적으
로 제42조의8제2항제2호 및 제3호
에 해당하는 개인정보관리 전문기
관에 전송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④ 법 제35조의2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의 규
정”이란 다음 각 호의 규정을 말
한다.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제33조
의2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규
정

2. 「전자정부법」 제43조의2제4
항 각 호에 해당하는 규정

3. 「의료법」 제21조제2항 및 제

<신 설>

3항

4. 「약사법」 제30조제3항

5.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52조제2항

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5조제2항

7.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7조제1항 및 제2항

8.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3조제3항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전송 요구의 방법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42조의6(개인정보 전송 방법 등)

① 본인 대상 정보전송자와 제3자 대상 정보전송자(이하 “정보전송자”라 한다)는 전산시스템 장애 등으로 전송이 지연되거나 불가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전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보전송자는 지체 없이 전송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정보주체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전송을 연기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소멸하면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전송하여야 한다.

② 정보전송자는 개인정보를 전송하는 경우 개인정보의 정확성, 완전성, 최신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③ 정보전송자는 전송의 안전성과 신뢰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식에 따라 개인정보를 전송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전송 요구 대상 정보에 대한 전송 방식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④ 제3자 대상 정보전송자는 법 제35조의2제2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전송하는 경우 제42조의8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을 통하여 전송하여야 한다.

⑤ 본인 대상 정보전송자는 정보주체가 법 제35조의2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 전송을 요구하고 전송 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본인 전송 요구 방법, 전송 현황 및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위원회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제42조의4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정보의 경우 제42조의8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이 본인 대상 정보전송자를 대신하여 제5항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⑦ 법 제35조의2제2항에 따라 개

인정보를 전송받는 일반수신자는 [별표 1의2]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⑧ 일반수신자와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제42조의8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은 다음 각 호의 접근수단을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식으로 사용·보관함으로써 제42조의4제2항 각 호의 정보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1.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전자서명생성정보 및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인증서

2. 제3자 대상 정보전송자에 등록된 정보주체의 식별자 또는 인증정보

3. 정보주체의 생체정보

4. 그 밖에 사용·보관시 정보주체의 권리를 해할 우려가 있는 접근수단으로써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

⑨ 법 제24조제1항 또는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고유식별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정보전송자 및 제42조의8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은 본인 여부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19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⑩ 일반수신자와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은 정보주체의 이익을 침해

하거나 건전한 전송 처리 체계를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
다.

⑪ 일반수신자와 개인정보관리 전
문기관은 일반수신자 또는 개인정
보관리 전문기관으로서 처리하는
정보와 다른 개인정보처리자로서
처리하는 정보를 분리하여 보관하
여야 한다.

⑫ 정보전송자, 일반수신자, 개인
정보관리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
의 개인정보 전송 내역을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단, 제3자 대상
정보전송자의 경우 제42조의8제2
항제1호에 해당하는 개인정보관
리 전문기관이 이를 대신할 수 있
다.

1. 제42조의5제1항 각 호의 사항
(해당하는 사항에 한한다)

2. 정보주체의 전송 요구에 따른
정보 송·수신 기록

3. 전송 요구의 철회, 전송 요구
거절 및 전송 중단 내역 및 사유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4. 그 밖에 개인정보 전송 내역 관
리를 위하여 보호위원회가 필요
하다고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⑬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제42조
의8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은 제12항에 따른 개인
정보 전송 내역을 법 제20조의2
및 제15조의3제4항 각 호의 어느

<신 설>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연 1회 이상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단, 정보주체가 통지에 대한 거부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⑭ 제11항, 제12항, 제13항에도 불구하고 보호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송받은 정보의 분리 보관 및 전송 내역 보관, 통지 방법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⑮ 제1항부터 제14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전송 방법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42조의7(전송 요구의 거절 및 전송 중단 등) ① 법 제35조의2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정보주체의 본인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2.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대리인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3.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법정대리인 동의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4. 정보주체가 제3자의 기망이나 협박 때문에 전송 요구를 한 것으로 의심될만한 정황이 확인되거나 그 밖에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

5. 정보주체의 인증정보 탈취 등 부당한 방법에 의한 전송 요구임을 알게 된 경우
 6. 제42조의5제1항에 따른 전송 요구 사항이 특정되지 않은 경우
 7. 정보주체 본인, 일반수신자,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제42조의8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이 아닌 자에게 전송해 줄 것을 요구한 경우
 8. 개인정보가 범죄에 악용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되어 정보주체의 이익을 명백히 침해하는 경우
 9. 법 제35조의2제7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의 권리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
 10. 법 제35조제4항에 따른 열람의 제한 또는 거절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11. 정보주체가 동일한 개인정보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과도하게 반복적으로 전송을 요구하여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12.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우와 유사한 경우로서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 ② 정보전송자는 법 제35조의2제6항 및 제42조의7제1항 각 호에 따

<신 설>

라 정보주체의 전송 요구를 거절하거나 전송을 중단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사실 및 그 사유를 정보주체에게 통지해야 한다. 단, 정보주체가 일반수신자 또는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을 통해 전송 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일반수신자 또는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을 통해 통지할 수 있다.

③ 일반수신자 또는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은 전송 요구에 대한 변경 및 철회 방법과 절차를 전송 요구할 당시의 방법과 절차보다 어렵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2조의12(개인정보 전송 요구에 대한 보호위원회의 관리·감독) ① 보호위원회는 법 제35조의4제1항에 따라 제3자 대상 정보전송자 현황을 관리·감독하기 위하여 해당 개인정보처리자가 대상인지 여부 확인에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자료제출을 요청 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② 보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1. 정보전송자:

가. 법 제35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전송요구권 이행 여부에 관한 사항

나. 그 밖에 이 법 위반 여부에

관한 사항

2. 일반수신자:

가. 법 제35조의2제2항제2호 및 제42조의3제1항에 따른 시설 및 기술 기준 충족 여부에 관한 사항

나. 그 밖에 이 법 위반 여부에 관한 사항

3.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가. 법 제35조의3제2항에 따른 지정요건 충족 및 유지 여부에 관한 사항

나.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업무와 관련한 기능 적합성 및 보안 취약점 조치 여부에 관한 사항

다. 그 밖에 이 법 위반 여부에 관한 사항

③ 보호위원회는 제2항의 사항을 관리·감독하기 위하여 정보전송자, 일반수신자,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정보전송자

가. 제42조의6제12항의 개인정보 전송 내역

나. 그 밖에 이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2. 일반수신자,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 가. 제42조의6제12항의 개인정보 전송 내역
- 나. 법 제35조의2제2항제2호 및 제42조의3제1항에 따른 시설 및 기술을 갖추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일반수신자에 한한다)
- 다. 법 제35조의3제2항에 따른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지정요건을 유지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에 한한다)
- 라. 개인정보의 처리 및 관리에 관한 서류
- 마. 전송 요구 방법(일반수신자, 일반 전문기관, 특수 전문기관에 한한다)
- 바. 기능 적합성 및 취약점 점검 내역(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에 한한다)
- 사. 그 밖에 이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 ④ 법 제26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중계 전문기관에 대한 처리 현황 점검 등에 관한 사항은 보호위원회가 관리·감독을 수행하여야 한다.
- ⑤ 이 법에 따른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및 일반수신자가 아닌 자

<신 설>

는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및 일반수신자 업무를 하는 것으로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제외한다.

제42조의13(개인정보 전송 지원 플랫폼의 구축 및 운영 등) ① 제3자 대상 정보전송자와 일반수신자,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은 개인정보가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전송될 수 있도록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절차에 따라 법 제35조의4제2항의 개인정보 전송 지원 플랫폼에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호위원회는 일반수신자에게 제42조의3제1항에 따른 시설 및 기술을 갖추었는지 확인에 필요한 서류 등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② 보호위원회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본인 또는 대리인 여부 확인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주민등록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6항에 따른 등록전산정보자료를 관계 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3자 대상 정보전송자, 일반 수신자 및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중계 전문기관은 제외한다)은 개인정보 전송 지원 플랫폼이 법 제 35조의4제2항제3호에 따라 전송 이력을 관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중계 전문기관을 통해 개인정보 전송 지원 플랫폼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제42조의6제12항에 따른 전송 내역

2. 전송받은 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내역(제3자 대상 정보전송자는 제외한다)

④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전송 이력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타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 전송을 지원하는 시스템을 운영하는 자에게 개인정보 전송 지원 플랫폼과 연계하여 정보주체의 전송 요구 내역 등을 제공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따라야 한다.

⑤ 일반수신자 및 일반 전문기관, 특수 전문기관이 전송 관련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일시적으로 중지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 해당 사실을 미리 개인정보 전송 지원 플랫폼과 중계 전문기관에 통지하

여야 한다.

⑥ 보호위원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의 전송에 필요한 시설 및 기술 구축·운영 비용 등 정보전송자의 전송요구권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⑦ 제1항에서 제6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개인정보 전송 지원 플랫폼의 구축·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별표 1의2]

일반수신자 금지 행위(제42조의6제7항 관련)

1. 개인정보를 전송받아 확인하는 것 이외에 이를 분석하여 맞춤형 서비스 안내, 연구·교육, 유통·판매 등 처리하는 행위
2. 전송 요구를 하도록 강요하거나 부당하게 유도하는 행위
3.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권리에 대한 대리행사를 강요하거나 부당하게 유도하는 행위
4. 전송 요구 목적과 관련 없는 개인정보를 전송하도록 요구하는 행위
5. 전송 요구 목적 달성 이후에도 전송받은 개인정보를 보관하는 행위
6. 전송받은 개인정보를 적법한 처리근거 없이 전송받은 목적 외로 처리하는 행위
7.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전송 요구 내용을 변경하는 행위
8. 정보주체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전송 요구를 즉시 변경, 철회하지 않는 행위
9.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 특정 정보주체의 이익을 해하는 행위
10. 정보주체의 전송 요구를 이유로 개인정보처리자의 전산설비에 과도하게 접근하여 부하를 일으키는 행위
11. 개인정보 전송에 따른 수수료의 지불을 회피하는 행위
12. 서비스 운영을 위해 필수적인 경우가 아님에도 전송받은 정보에 대한 제3자 제공 동의를 전송 요구와 동시에 받는 행위
13. 그 밖에 정보주체의 이익을 침해하거나 건전한 전송요구권 생태계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I.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디지털 시대에 걸맞는 적극적 프라이버시 권리*를 보장하여 국민의 개인 정보 자기결정권을 강화하고, 기업·기관별 칸막이에 가로막힌 데이터를 정보주체 의사에 따라 융합하여 데이터 활용 생태계를 한 단계 진일보 하기 위해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도입(「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23.3.14)

* 기업·기관의 필요에 따라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한 이후 수동적 지위에 머물던 국민이 데이터에 대한 적극적 권리행사 가능

-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을 기반으로 하는 마이데이터는 이중 분야간 데이터 이동·연계가 핵심이므로, 개별 분야별로 추진되던 마이데이터를 전 분야로 확대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이고 일관된 전송 절차 및 기준을 마련할 필요

※ 정부는 4차위·관계부처합동으로 논의한 '마이데이터 발전 종합정책'(21.6.11. 4차위 의결)을 통해, 법제도 기반을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일원화하기로 함

-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으로 도입된 개인정보의 전송요구권을 안정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정보주체의 전송요구 방법, 정보의 안전한 전송 방법, 전송요구의 거절 및 전송의 중단 방법 등과 관련한 기준 및 절차를 구체화하여 규정할 필요

2. 규제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내용 및 선택 근거

○ 대안의 내용

	대안명	개인정보 전송 관련 구체적 기준 마련
규제대안1	내용	○ 전송요구 및 정보 전송, 거절 및 중단 관련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 기준 마련 – 안정적인 전송체계 마련을 위해 전송요구 사항 특정, 중계전문기관 활용, 전송정보 보관 등 전송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

		- 정보전송자 및 전송대상 정보 범위를 부문별 특성을 고려하여 유형화
규제대안2	대안명	개인정보 전송 관련 기본적 기준 마련
	내용	- o 전송요구 및 정보 전송, 거절 및 중단 관련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기본적 사항 규정 - 기본적 기준만 규정하고 사업자가 개별적인 방법으로 전송요구에 응하도록 규정 - 구체적인 유형 구분 없이 법률에 명시된 모든 개인정보처리자 및 전송항목으로 기준 규정

o 대안의 비교

구분	장점	단점
규제대안1	· 전송요구 및 전송방법 등 전송 요구권 관련 구체적인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여 국민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지 않도록 안전한 전송을 구현하고, 일관된 체계를 통해 이종 분야·산업간 데이터 융합 활성화 가능 · 유형별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명확해지고, 소관 기관과 협력을 통해 유형별 인프라 상황을 고려하여 제도 추진 가능	· 정보전송자와 전송정보 범위의 유형이 구분되어 초기에는 우선 추진분야(의료·통신·유통 등)를 중심으로 전송이 가능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점진적으로 확대
규제대안2	· 사업자가 개별적인 방법으로 전송요구에 응함에 따라 사업자 자율성 강화 · 개념상 법률에 규정된 모든 개인정보처리자에 전송 요구가 가능하여 정보주체 권리가 일시에 확대	· 전 분야 데이터 전송은 일원화된 체계로 연계·활용되어야 하나 개별 사업자별로 전송요구 및 전송 방법을 마련하는 경우 데이터 연계 및 안전한 전송체계 구현이 어려워지고 사회적 혼란 발생 · 현실적 운영이 어려워 전송요구권

		제도가 사문화될 수 있으며, 유형별 상황을 고려하지 못함에 따라 혼란 발생 가능
--	--	--

o 대안의 선택 및 근거

- 데이터 연계·활용 활성화 및 전송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전 분야 개인정보 전송과 관련한 일관적인 체계를 적용하고, 산업별 상황을 고려하기 위해 정보전송자 및 전송항목을 유형화하여 구분한 규제대안 1을 선택
- 전송요구 및 전송방법 등 전송요구권 관련 구체적인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여 전 분야에서 일관되고 안전한 체계로 제도 운영 가능
- 정부가 안전하고 효율적인 절차 방식을 마련하여 국민의 프라이버시를 보장하는 형태로 안전한 전송이 가능하며, 데이터 관리 및 이종 분야·산업간 데이터 융합 활성화 가능
- 유형별 소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명확해지며, 소관 기관과 협력을 통해 유형별 인프라 등 상황을 고려한 마이데이터 추진 가능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이해관계자명	일시·장소·방법	조치결과
마이데이터 협의회 (부처·산업·학계·법조계)	○ 전송요구권 하위법령 등 제도 세부기준안 의견청취(3.8)	필요사항 시행령안 반영
마이데이터 실무협의체 (의료·통신·유통 분야 산업계)	○ 의료·통신·유통 등 부문별로 정보제공자, 전송항목, 전송방법 등 의견청취(23.11월~24.3월)	필요사항 시행령안 반영

3. 규제목표

- 정보주체가 전송요구권을 행사하는 방법 및 절차, 정보전송자의 전송 방법 등 개인정보 전송 요구권에 관한 일관된 기준 및 절차를 정함으로써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
- 국민이 번거로운 서류 발급이나 행정절차 없이 본인이 필요한 곳에 데이터를 편리하게 전송하거나, 의료·통신·유통 등 다양한 영역에서 개인 맞춤형 서비스를 향유하여 편의성 증진
- 기업·기관별 칸막이에 가로막혔던 데이터를 정보주체의 의사에 따라 이동시킴으로써 서로 다양한 분야 데이터와 융합하여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출하고 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
- 마이데이터를 활용하여 국민들에게 노인 위급상황 알림, 취약계층 요금 감면 등 다양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령화·재난·복지 등 사회적 난제 해결 가능

II. 규제의 적정성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제공한 개인정보를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전송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개인정보처리자와의 관계에서 수동적 지위에 있는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적극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는 측면에서 중요
- 동 개정안은 법 개정으로 도입된 개인정보의 전송요구권에 따라 데이터를 안정적으로 전송하는데 필요한 전송요구, 전송 및 거절·중단 등에 대한 기준 및 절차를 「개인정보 보호법」상 원칙 및 기준, 전송요구권이 기 도입된 금융·공공 분야의 입법례 등을 고려하여 필요최소한으로 규정

- 분야별 정보를 안정적으로 전송·연계·활용하기 위해서는 전송요구 및 전송방법 및 절차가 일관적·구체적으로 규정되어야 안전한 정보 전송 및 프라이버시 침해 없는 데이터 전송·활용 가능
- 상기의 사항을 고려할 때 목적 및 수단간 비례적 타당성이 인정됨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기술	경쟁	중기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 경쟁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경쟁영향평가 점검항목	해당 여부
(A) 사업자의 수 또는 범위 제한	해당없음
(B) 사업자의 경쟁능력 제한	해당없음
(C) 사업자의 경쟁유인 감소	해당없음
(D)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선택과 정보의 제한	해당없음

- 중소기업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 규제 차등화 예비분석 결과표

① 규제 영역	해당없음
② 규제 방식	해당없음
③ 예비분석모델	해당없음
판단 근거	해당없음
④ 대상 업종	해당없음
⑤ 예비분석내용	해당없음
⑥ 차등화적용 여부	해당없음

o 기타 고려사항

- 고용친화적 규제설계

해당사항 없음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해당사항 없음

- 일몰설정 여부

해당사항 없음

- 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 여부

분류	적용여부	적용내용/미적용사유
포괄적 개념 정의	미적용	정보전송자 및 전송정보의 범위, 개인정보의 전송요구 및 전송의 방법 및 절차, 전송요구 거절 및 중단 사유 등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관련 구체적 기준 및 절차를 규정하는 사항으로 포괄적 개념 정의가 적합하지 않음
유연한 분류 체계	미적용	정보전송자 및 전송정보의 범위, 개인정보의 전송요구 및 전송의 방법 및 절차, 전송요구 거절 및 중단 사유 등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관련 구체적 기준 및 절차를 규정하는 사항으로 유연한 분류 체계가 적합하지 않음
네거티브 리스트	미적용	정보전송자 및 전송정보의 범위, 개인정보의 전송요구 및 전송의 방법 및 절차, 전송요구 거절 및 중단 사유 등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관련 구체적 기준 및 절차를 규정하는 사항으로 네거티브 리스트 규제가 적합하지 않음
사후 평가관리	미적용	정보전송자 및 전송정보의 범위, 개인정보의 전송요구 및 전송의 방법 및 절차, 전송요구 거절 및 중단 사유 등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관련 구체적 기준 및 절차를 규정하는 사항으로 사후 평가관리가 적합하지 않음
규제 샌드박스	미적용	정보전송자 및 전송정보의 범위, 개인정보의 전송요구 및 전송의 방법 및 절차, 전송요구 거절 및 중단 사유 등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관련 구체적 기준 및 절차를 규정하는 사항으로 규제 샌드박스가 적합하지 않음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 해외사례

① 유럽연합(EU)

- 유럽 「개인정보 보호법(GDPR)」은 제20조(Right to data portability)를 통해 정보주체가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 받을 권리인 개인정보 이동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기술적으로 가능한 경우 제3자에게 직접 전송되도록 할 권리도 포함

제20조 개인정보 이동권

1. 개인정보주체는 컨트롤러에게 제공한 본인에 관련된 개인정보를 체계적이고, 통상적으로 사용되며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식으로 수령할 권리가 있으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컨트롤러로부터 방해 받지 않고 다른 컨트롤러에게 해당 개인정보를 이동할 권리를 가진다.
(a) 처리가 제6조(1)의 (a)호나 제9조(2)의 (a)호에 따른 동의나 제6조(1)의 (b)호에 따른 계약을 근거로 하는 경우
(b) 처리가 자동화된 수단으로 시행되는 경우
2. 제1항에 따른 본인의 개인정보 이동권을 행사하는 데 있어, 개인정보주체는 기술적으로 가능한 경우 해당 개인정보를 한 컨트롤러에서 다른 컨트롤러로 직접 이전할 권리를 가진다.
3. 본 조 제1항에 규정된 권리의 행사는 제17조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 해당 권리는 공익을 위해서 또는 컨트롤러에게 부여된 공식권한을 행사하여 이루어지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처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4. 제1항에 규정된 권리는 다른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

② 미국

- 미국은 에너지, 건강(의료), 교육 분야의 개인정보를 내려받아 직접 활용하거나 공유할 수 있도록 '스마트 공시' 제도를 추진
 - ※ 스마트 공시란 복잡한 데이터를 표준화하고, 기계 판독이 가능한 파일로 만들어 사용자의 의사 결정에 도움이 되도록 공시하는 것을 말함
- 또한, 미국 캘리포니아 프라이버시 보호법(CCPA)에서 소비자가 개인정보를 전자적 방식으로 제공 받을 권리를 규정
 - 사업자는 제공을 요구한 자가 정당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인지 확인하기 위한 인증(authentication)을 하여야 하며, 소비자가 다른 곳에 이전하여 쉽게 사용할 수 있는 형식으로 제공하여야 함

관련 국제기준	일치여부	불일치 사유(불일치 시에 한함)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 타법 사례

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개인신용정보의 전송요구)

- 개인신용정보주체가 신용정보제공·이용자등에 대하여 본인의 신용정보를 본인,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개인신용평가회사 등에 제공할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

제33조의2(개인신용정보의 전송요구) ① 개인인 신용정보주체는 신용정보제공·이용자등에 대하여 그가 보유하고 있는 본인에 관한 개인신용정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전송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1. 해당 신용정보주체 본인
2.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정보제공·이용자
4. 개인신용평가회사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자와 유사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라 개인인 신용정보주체가 전송을 요구할 수 있는 본인에 관한 개인신용정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해당 신용정보주체(법령 등에 따라 그 신용정보주체의 신용정보를 처리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와 신용정보제공·이용자등 사이에서 처리된 신용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일 것

가. 신용정보제공·이용자등이 신용정보주체로부터 수집한 정보

나. 신용정보주체가 신용정보제공·이용자등에게 제공한 정보

다. 신용정보주체와 신용정보제공·이용자등 간의 권리·의무 관계에서 생성된 정보

2.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로 처리된 신용정보일 것

3. 신용정보제공·이용자등이 개인신용정보를 기초로 별도로 생성하거나 가공한 신용정보가 아닐 것

③ 제1항에 따라 본인으로부터 개인신용정보의 전송요구를 받은 신용정보제공·이용자등은 제32조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의 관련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체 없이 본인에 관한 개인신용정보를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로 처리가 가능한 형태로 전송하여야 한다.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2.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3. 「지방세기본법」 제86조
4.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규정과 유사한 규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의 관련 규정

- ④ 제1항에 따라 신용정보주체 본인이 개인신용정보의 전송을 요구하는 경우 신용정보제공·이용자등에 대하여 해당 개인신용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같은 내역의 개인신용정보를 전송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 ⑤ 개인인 신용정보주체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제1항에 따른 전송요구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특정하여 전자문서나 그 밖에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 1. 신용정보제공·이용자등으로서 전송요구를 받는 자
 - 2. 전송을 요구하는 개인신용정보
 - 3. 전송요구에 따라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
 - 4. 정기적인 전송을 요구하는지 여부 및 요구하는 경우 그 주기
 -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과 유사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⑥ 제3항에 따라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한 신용정보제공·이용자등은 제32조제7항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의 관련 규정에도 불구하고 개인신용정보의 전송 사실을 해당 신용정보주체 본인에게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2
 - 2. 그 밖에 개인신용정보의 처리에 관한 규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의 관련 규정
- ⑦ 개인인 신용정보주체는 제1항에 따른 전송요구를 철회할 수 있다.
- ⑧ 제1항에 따라 본인으로부터 개인신용정보의 전송요구를 받은 신용정보제공·이용자등은 신용정보주체의 본인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전송요구를 거절하거나 전송을 정지·중단할 수 있다.
- ⑨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전송요구의 방법, 제3항에 따른 전송의 기한 및 방법, 제7항에 따른 전송요구 철회의 방법, 제8항에 따른 거절이나 정지·중단의 방법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신용정보업 등의 허가) ①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신용정보업, 본인신용정보관리업, 채권추심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신용정보업, 본인신용정보관리업 또는 채권추심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신용정보업, 본인신용정보관리업 및 채권추심업을 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22조의9(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의 행위규칙) ①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개인인 신용정보주체에게 개인신용정보의 전송요구를 강요하거나 부당하게 유도하는 행위
 - 2. 그 밖에 신용정보주체 보호 또는 건전한 신용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 ②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는 제11조제6항에 따른 업무 및 제11조의2제6항제3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개인인 신용정보주체와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한 내부관리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③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는 다음 각 호의 수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으로 사용·보관함으로써 신용정보주체에게 교부할 신용정보를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정보제공·이용자나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또는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이하 이 조 및 제33조의2에서 “신용정보제공·이용자등”이라 한다)가 선정하여 사용·관리하는 신용정보주체 본인에 관한 수단으로서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접근매체
 2. 본인임을 확인 받는 수단으로서 본인의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 제시 또는 전화, 인터넷 홈페이지의 이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 ④ 신용정보제공·이용자등은 개인인 신용정보주체가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에 본인에 관한 개인신용정보의 전송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정보제공의 안전성과 신뢰성이 보장될 수 있는 방식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으로 해당 개인인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를 그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에 직접 전송하여야 한다.
-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신용정보제공·이용자등의 규모, 금융거래 등 상거래의 빈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 신용정보제공·이용자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계기관을 통하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에 개인신용정보를 전송할 수 있다.
- ⑥ 신용정보제공·이용자등은 제33조의2제4항에 따라 개인신용정보를 정기적으로 전송할 경우에는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비용을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가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 ⑦ 제4항 및 제5항의 전송의 절차·방법, 제6항에 따른 비용의 산정기준 등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전자정부법」 제43조의2(정보주체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의 제공요구권)

- 정보주체가 본인에 관한 증명서류 또는 구비서류 등의 행정정보를 본인 또는 본인이 지정하는 제3자에게 제공할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

제43조의2(정보주체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의 제공요구권) ① 정보주체는 행정기관등이 정보처리능력을 지닌 장치에 의하여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행정기관등의 장으로 하여금 본인에 관한 증명서류 또는 구비서류 등의 행정정보(법원의 재판사무·조정사무 및 그 밖에 이와 관련된 사무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이하 “본인정보”라 한다)를 본인이나 본인이 지정하는 자로서 본인정보를 이용하여 업무(「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따라 처리하는 민원은 제외한다)를 처리하려는 다음 각 호의 자(이하 “제3자”라 한다)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1. 행정기관등
 2. 「은행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은행업의 인가를 받은 은행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
- ② 정보주체가 제1항에 따라 본인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할 때에는 해당 본인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같은 내역의 본인정보를 제공하여 줄 것을 행정기관등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해당 제공 요구를 철회할 수 있다.
- ③ 정보주체가 제1항에 따라 본인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특정하여야 한다.

1. 제공 요구를 받는 행정기관등의 장
 2. 제공 요구하는 본인정보
 3. 제공 요구에 따라 본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4. 정기적인 제공을 요구하는지 여부 및 요구하는 경우 그 주기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과 유사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④ 제1항에 따라 본인정보의 제공 요구를 받은 행정기관등의 장은 다음 각 호의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본인정보를 정보주체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지체 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제4항에 따른 제한 또는 거절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39조
 2.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3. 「건축법」 제32조
 4.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
 5. 「관세법」 제116조
 6.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7. 「부동산등기법」 제109조의2
 8. 「상업등기법」 제21조
 9. 「자동차관리법」 제69조
 10. 「주민등록법」 제30조
 11. 「지방세기본법」 제86조
 12.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규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의 규정
-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정보주체가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본인정보의 종류를 해당 본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행정기관등의 장과 협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 ⑥ 행정기관등의 장이 제1항의 제공 요구에 따라 정보처리능력을 지닌 장치에 의하여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본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 ⑦ 정보주체가 제1항에 따라 본인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이 제공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해당 본인정보가 본인에 관한 것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1. 제10조에 따른 민원인 등의 본인 확인 방법
 2. 행정기관등이 보유하고 있는 지문 등의 생체정보를 이용하는 방법
 3. 「주민등록법」 제35조제2호, 「도로교통법」 제137조제5항 또는 「여권법」 제23조의2 제2항에 따라 신분증명서의 진위를 확인하는 방법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본인정보의 요구방법 및 수수료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Ⅲ. 규제 의 실효성

1. 규제 의 순응도

○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 동 개정안은 개인정보처리자(정보전송자)가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따라 정보를 전송할 때 필요한 기준 및 절차, 방법 등을 구체화한 것으로,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의 전송시 수수료를 통해 전송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받을 수 있고 불합리한 전송요구는 거절·중단할 수 있도록 규정함에 따라 준수 가능성 높음

2. 규제 의 집행가능성

○ 행정적 집행가능성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기존 인력을 활용하여 집행 가능

○ 재정적 집행가능성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기존 예산을 활용하여 집행 가능

IV.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1. 추진 경과

-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의결('23.2.27) 및 공포('23.3.14)
- 「법정부 마이데이터 추진단*」 출범('23.7.24)
 - * 과기정통부, 복지부, 교육부, 행안부, 금융위 등 관계부처로 구성된 실무추진단(1단 3팀 8개부처)
- 관계부처 합동 「국가 마이데이터 혁신 추진전략」 발표('23.8.17)
- 민관합동 마이데이터 협의회* 신설 및 제1차 회의('23.11.14)
 - * 개인정보위 위원장 주재, 기재부·교육부·과기부·행안부·문체부·산업부·복지부·금융위 등 차관급 공무원(12개 부처), 산업계, 학계·연구계, 법조계, 시민단체 등 총 26명으로 구성
- 부문(의료, 통신, 유통)별 실무협의체 회의 운영('23.12월~)
- 민관합동 마이데이터 협의회 제2차 회의('24.3.8)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24.5.1~'24.6.10)

2. 향후 평가계획

- 개인정보처리자가 동 제도에 대해 인지하고 정보주체의 전송요구에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산업계, 시민단체 등 관련 참여자의 의견을 수시로 청취하는 등 제도 개선을 위한 모니터링을 병행할 예정

3. 규제 정비계획

- 해당 없음

4. 종합결론

-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제공한 개인정보를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전송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신설(법 제35조의2)됨에 따라, 전송요구의 방법, 정보의 전송 방법 및 절차, 전송요구의 거절 및 전송의 중단 방법 등 세부 절차를 마련할 필요

- 분야별 정보를 안정적·체계적으로 전송·연계·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전송요구 및 전송방법 및 절차를 규정한 것으로, 법령의 타당성이 인정됨

가. 대안별 분석 비교표

분석기준년도	규제시행년도	분석대상기간 (년)	할인율 (%)	단위
2024	2025	0	4.5	백만원, 현재가치

규제대안1 :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 국민				
정부				
총 합계				
기업순비용			연간균등순비용	

정성분석 내용 및 기타 참고사항

- (비용) 개인정보 전송에 따른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나, 중계 전문기관을 통해 개인정보를 전송함에 따라 전송처리에 관한 실제 부담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되며, 실제 비용이 발생하더라도 수수료를 통해 전송 비용 보전 가능
- (편익)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전송에 따른 수수료 확보 가능, 데이터 융합을 통해 혁신적 비즈니스 창출, 국민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강화, 서류 발급 및 행정 절차 감축, 개인 맞춤형 서비스 확대,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가능

나. 각 대안의 활동별 비용·편익 분석 결과

<규제대안1 : 개인정보 전송 관련 구체적 기준 마련>

① 피규제 기업·소상공인 :

☐ 직접비용

(정성)세분류	개인정보처리자
활동제목	개인정보의 전송요구에 관한 사항
비용항목	운영
일시적/반복적	반복적
근거설명	○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행사에 대응하여 개인정보를 전송하면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 다만, 중계 전문기관을 통해 개인정보를 전송함에 따라 전송처리에 관한 실제 부담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되며, 실제 비용이 발생하더라도 동법 시행령에 따라 수수료를 통해 전송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받을 수 있음

☐ 직접편익

(정성)세분류	개인정보처리자
활동제목	개인정보의 전송요구에 관한 사항
편익항목	수수료 확보 및 신규 비즈니스 창출 등
일시적/반복적	반복적
근거설명	○ 개인정보처리자는 동법 시행령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전송에 대해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어 수수료 편익 발생 가능 ○ 개인정보처리자는 기업·기관별 칸막이에 가로막혀 그동안 확보하기 어려웠던 데이터를 정보주체의 의사에 따라 전송받고, 다양한 분야의 데이터를 융합하여 혁신적 비즈니스 창출 가능, 새로운 서비스 모델 발굴에 따라 해외진출 기회 확대

②피규제자 이외 일반국민 :

☐ 편익

(정성)세분류	일반국민
활동제목	개인정보의 전송요구에 관한 사항
편익항목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강화, 국민 편의 서비스 확대
일시적/반복적	반복적
근거설명	○ 정보주체는 그간 개인정보처리자의 필요에 따라 개인정보 활용에 수집·동의한 이후 개인정보 활용에 수동적인 지위에 머물러 왔으나, 개인정보 전송요구를 통해 본인의 정보를 적극적으로 관리하여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강화 ○ 전 분야 개인정보의 전송요구권 도입을 통해 번거로운 서류 발급이나 행정절차 없이 본인이 필요한 곳에 데이터를 편리하게 전송할 수 있고, 의료·통신·유통 등 다양한 영역에서 개인 맞춤형 서비스를 이용하여 국민 편의성 증진

③정부 :

☐ 편익

(정성)세분류	정부
활동제목	개인정보의 전송요구에 관한 사항
편익항목	사회·복지서비스 확대, 데이터 기반 과학행정 실현
일시적/반복적	반복적
근거설명	○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등 행정·공공기관은 마이데이터를 통해 노인 위급상황 알림, 취약계층 요금감면 등 다양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고령화·재난·복지 등 사회적 난제를 해결하는 데이터 기반 과학행정 실현 가능

< 규제 개요 >

기본 정보	1.규제사무명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2.규제조문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제42조의8~제42조의11, 별표 1의3		
	3.위임법령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의3		
	4.유형	신설	5.입법예고	2024.5.1~2024.6.10
규제의 필요성	6.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23.3.14)으로 도입된 개인정보의 전송요구권에 따라 정보주체의 전송요구권을 안정적이고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전송받은 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자를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지정 요건 및 절차, 취소 절차 등 규정		
	7.규제내용	전문기관 업무, 세부 지정요건, 지정·재지정 절차, 변경심사, 유효기간, 취소 절차, 행위규칙 등에 관한 사항 규정		
	8.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		
	9.도입목표 및 기대효과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보호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사업자가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으로 지정받도록 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오남용 및 침해로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함		
규제의 적정성	10.비용·편익 분석 (정성분석)	(비용) 개인정보보호법상 원칙 및 기준을 제대로 준수하는지 여부, 지정기준을 충족하는 기관인지 여부 등 중앙행정기관의 관리·감독을 받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제한적 (편익) 지정받은 전문기관은 그동안 확보하기 어려웠던 데이터를 정보주체의 의사에 따라 전송받고, 다양한 분야의 데이터를 융합하여 혁신적 비즈니스 창출 가능, 국민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 강화되고 개인 맞춤형 서비스,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으로 편익 확대		
	11.영향평가 여부	기술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중기영향평가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기타	12.일몰설정 여부 등	대분류	소분류	
		일몰설정 예외기준	1. 국제조약 등에 따라 동일하게 적용 되어야 하는 규제	해당
			2. 국가의 질서 유지 및 국민생명·안전과 직접 관련된 규제	해당
			3. 사회통념상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규범적 성격의 규제	해당
		경제규제	4. 국민과 기업의 경제활동에 대한 규제	미해당

	여부기준	5. 경제활동에 직접영향을 주는 규제			미해당
	일몰설정 세부기준	6. 피규제자의 규제부담이 매우 큰 규제			미해당
		7. 한시적 목적을 위한 규제이거나 주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규제			미해당
	일몰설정여부		일몰조문		연장여부
	미설정				
	일몰유형		일몰설정기간		일몰주기
13. 우선허용 · 사후 규제 적용여부	해당없음				
14. 비용감축 제	적용여부	비용	편익	연간균등순비용	
	-	-	-	-	
15. 규제정비 계획	해당없음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u>제42조의8(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u> <u>의 업무 등) ① 법 제35조의3제1</u> <u>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u> <u>는 업무”란 제42조의4제2항제1호</u> <u>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의 전송 요</u> <u>구 관련 정보주체의 권리행사를</u> <u>지원하기 위한 개인정보의 관리·</u> <u>분석 업무를 말한다.</u> <u>② 법 제35조의3제1항의 개인정보</u> <u>관리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로 분</u> <u>류된다.</u> <u>1. 중계 전문기관: 법 제35조의3제</u> <u>1항제1호 및 제2호의 업무로서</u> <u>개인정보 전송 중계에 필요한</u> <u>시스템 운영 및 기능을 제공하</u> <u>는 업무 및 정보전송자의 전송</u> <u>을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하는</u> <u>자</u> <u>2. 일반 전문기관: 법 제35조의3제</u> <u>1항제3호의 업무로서 제3자 대</u> <u>상 정보전송자로부터 전송받은</u> <u>개인정보를 관리·분석하여 통합</u> <u>조회, 맞춤형 서비스, 연구, 교육</u> <u>등에 이용하는 업무를 수행하는</u> <u>자</u> <u>3. 특수 전문기관: 제1항의 업무로</u> <u>서 제3자 대상 정보전송자로부터</u> <u>전송받은 개인정보를 관리·</u> <u>분석하여 통합조회, 맞춤형 서비</u> <u>스, 연구, 교육 등에 이용하는 업</u>

<신 설>

무를 수행하는 자

③ 중계 전문기관은 일반수신자, 일반 전문기관, 특수 전문기관 업무를 함께 수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중계 전문기관으로 지정 받은 공공기관 또는 비영리법인·단체는 보호위원회가 심의·의결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 법에 따른 절차를 거쳐 일반수신자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일반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다.

④ 중계 전문기관은 중계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5제1항에 따른 연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⑤ 보호위원회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중계 전문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⑥ 정보주체가 법 제35조의2제2항에 따라 제42조의4제2항제1호의 정보를 전송 요구하는 경우 제3자 대상 정보전송자는 해당 정보를 특수 전문기관으로만 전송하여야 한다.

제42조의9(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35조의3제2항에 따른 지정요건별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술수준 및 전문성:

가. 정보주체와 제3자의 권리와 이익을 증대하기 위해 전문성있는 타당하고 건전한 사업계획을 갖추고 있을 것

나.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업무를 위한 개인정보 관리 계획이 적정할 것

다. 제42조의8제2항 각 호에 따른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설비 및 기술을 적정하게 갖추고 있을 것

2. 안전성 확보조치 수준:

가. 법 제29조에 따른 안전조치 의무를 이행할 것

나.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을 안전하게 운영하기 위해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보호체계를 적정하게 갖추고 있을 것

3. 재정능력(다만, 법 제2조제6호가목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은 제외한다):

가. 재무구조가 건전하고 안전성이 있을 것

나. 다음 각각의 구분에 따른 자본금

1) 중계 전문기관: 자본금 10억 원 이상(비영리법인·단체의 경우 기본재산 또는 자본총계 10억 원 이상)

2) 일반 전문기관, 특수 전문
기관: 자본금 1억 원 이상
(비영리법인·단체의 경우
기본재산 또는 자본총계 1
억 원 이상)

다.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위
하여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것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호위원
회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법인 또는 단체가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경우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제1항의 지정요건 중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심사를 생략할 수 있
다. 다만, 제1항의 지정요건 전부
에 대한 심사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는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
하는 기관·법인 또는 단체에 한
한다.

1.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
기관(제42조의4제2항제1호의 정
보를 전송받는 경우에 한한다)
2.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
체
3.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공공기
관(단, 제2호의 자는 제외한다)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와 유
사한 경우로서 지정요건 중 일
부에 대한 심사를 생략할 수 있

는 것으로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③ 법 제35조의3제1항에 따라 개
인정보관리 전문기관으로 지정받
으려는 기관·법인 또는 단체(이
하 “지정신청자”라 한다)는 보호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개인정
보관리 전문기관 지정신청서에 다
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
한다. 이하 같다)를 첨부하여 보호
위원회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보
호위원회는 법 제35조의4제2항에
따른 개인정보 전송 지원 플랫폼
을 통해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1. 정관 또는 규약(법인 또는 단체
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2. 사업계획서

3. 개인정보 관리 계획서

4. 과거 3개년간의 재무제표(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만 해당한
다)

5. 법 제35조의3제2항에 따른 지
정요건을 충족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6. 그 밖에 개인정보관리 전문기
관 지정에 필요하다고 보호위원
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④ 제3항에 따라 개인정보관리 전
문기관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보
호위원회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

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 한정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⑤ 지정신청자는 제3항에 따른 지정신청을 하기 전에 보호위원회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예비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예비지정의 신청 및 심사 절차는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지정절차를 준용한다. 이 경우 ‘지정’은 ‘예비지정’으로 한다.

⑥ 보호위원회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지정 시 조건을 붙여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호위원회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⑦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은 자는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법 제35조의3제2항 각 호에 따른 지정요건(제2항에 따라 지정요건 중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심사를 생략한 경우에는 심사받은 요건)을 유지하여야 한다.

⑧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미리 보호위원회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보

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실을 보호위원회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정관 또는 규약의 변경

2. 사업계획서의 변경

⑨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중계 전문기관은 제외한다)이 제8항 본문에 따라 변경하려는 중요사항이 제42조의4제2항 각 호의 정보와 관련 있는 경우 사전에 보호위원회와 협의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⑩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지정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하며, 보호위원회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이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면 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 세부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으로 재지정할 수 있다.

⑪ 제1항부터 제10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지정, 예비지정, 재지정, 심사, 변경 승인 및 신고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42조의10(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등) ① 보호위원회

<신 설>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지
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스스로
지정 취소를 요청하거나 폐업한
경우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개인
정보의 유출 등 침해사고가 발
생한 경우

3. 제42조의9제6항의 조건을 위반
한 경우

4. 지정을 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
이 1년 이내에 개인정보관리 전
문기관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

5. 법 제63조에 따른 관계 공무원
의 직무 수행을 기피 또는 방해
한 경우

6. 그 밖에 제42조의11에 규정된
행위규칙을 위반한 경우

② 보호위원회 또는 관계 중앙행
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개인
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지정을 취소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③ 중계 전문기관은 전송 관련 업
무를 일시적으로 중지 또는 폐지
하고자 하는 때에는 중지 또는 폐
지하고자 하는 날의 6개월 전까지
보호위원회와 관계 중앙행정기관

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호위원회는 해당 중계 전문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파기 및 이용기관 통지 등 해당 중계 전문기관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④ 보호위원회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을 지정, 재지정 또는 지정 취소한 경우에는 이를 관보에 공고하거나 보호위원회 또는 해당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을 지정, 예비지정, 중요사항 변경 관련 사전 승인, 재지정, 지정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보호위원회에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중계 전문기관을 지정, 예비지정, 중요사항 변경 관련 사전 승인, 재지정 또는 지정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보호위원회와 사전에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⑦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제5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사실을 통지받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에게 개인정보의 파

<신 설>

기 등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지정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42조의11(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행위규칙) 법 제35조의3제3항 제2호의 “개인정보를 침해하거나 정보주체의 권리를 제한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별표 1의3]의 행위를 말한다.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금지행위(제42조의11 관련)

1. 중계 전문기관 금지행위

- 가. 정보주체의 전송 요구 철회 요청에도 불구하고 즉시 전송 절차를 중단하지 않는 행위
- 나. 전송 절차 중단을 이유로 정당한 이유 없이 위약금 등 금전적·경제적 대가를 요구하거나 과도하게 높은 수수료를 요구하는 행위
- 다. 중계 전문기관 지정 취소에도 불구하고 수행 중인 업무를 중단, 이전, 파기하지 않는 행위
- 라. 중계시스템 장애, 오류 등 발생 시 보호위원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이용기관에 즉시 통지하지 않는 행위
- 마. 중계수수료를 과도하게 측정하거나 부풀려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
- 바. 중계 전문기관을 이용하고자 하는 제3자 대상 정보전송자, 일반수신자, 일반 전문기관, 특수 전문기관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중계를 거부하거나 이용을 차별하는 행위
- 사. 중계 업무 종료 후 정당한 사유(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 등)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는 행위
- 아. 중계기관의 지위에서 전송받은 정보를 적법한 처리근거 없이 중계목적 외로 처리하는 행위
- 자. 중계업무 내역에 대한 기록을 작성하지 않거나 보관하지 않는 행위
- 차. 보호위원회가 고시하는 바에 따라 서비스 개발 및 주요기능 변경 시 서비스 기능 등에 대해 적합성 심사를 받지 않거나, 서비스 보안성에 대해 보안 취약점 점검을 수행하지 않는 행위
- 카. 그 밖에 정보주체의 이익을 침해하거나 건전한 전송요구권 생태계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2. 일반 전문기관 및 특수 전문기관 금지행위

- 가. 전송 요구를 하도록 강요하거나 부당하게 유도하는 행위
- 나. 자신이 아닌 제3자에게 전송 요구를 하지 않도록 강요·유도하거나 제3자에 대한 전송 요구를 철회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 다. 정보주체에게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계약 체결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추천 또는 권유하는 행위
- 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전송 요구 내용을 변경하거나 법 제35조의2제2항에 따라

- 정보주체가 요구한 전송 요구 대상 범위 이상의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행위
- 마.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 특정 정보주체의 이익을 해하는 행위
- 바. 정보주체의 전송 요구를 이유로 개인정보처리자의 전산설비에 과도하게 접근하여 부하를 일으키는 행위
- 사. 개인정보 전송에 따른 수수료의 지불을 회피하는 행위
- 아.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권리에 대한 대리행사를 강요하거나 부당하게 유도하는 행위
- 자. 정보주체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전송 요구를 즉시 변경, 철회하지 않는 행위
- 차. 전송 요구 변경 및 철회를 이유로 정당한 이유 없이 위약금 등 금전적·경제적 대가를 요구하는 행위
- 카. 전송 요구 목적과 관련 없는 개인정보를 전송하도록 요구하는 행위
- 타. 전송받은 개인정보를 적법한 처리근거 없이 전송받은 목적 외로 처리하는 행위
- 파. 전송 요구 목적 달성 이후에도 전송받은 개인정보를 보관하는 행위
- 하. 서비스 운영을 위해 필수적인 경우가 아님에도 전송받은 정보에 대한 제3자 제공 동의를 전송 요구와 동시에 받는 행위
- 거. 보호위원회가 고시하는 바에 따라 서비스 개발 및 주요기능 변경 시 서비스 기능 등에 대해 적합성 심사를 받지 않거나, 서비스 보안성에 대해 보안 취약점 점검을 수행하지 않는 행위
- 너. 그 밖에 정보주체의 이익을 침해하거나 건전한 전송요구권 생태계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3. 특수 전문기관 기타 금지행위

- 가. 금전적 이익 등을 조건으로 정보주체의 전송 동의를 유도하는 행위
- 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신질환자,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애인,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기등기증자,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에 따른 후천성면역결핍증환자 등을 차별하는 행위
- 다.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46조제1항 및 제2항, 제50조에 따라 금지 및 제한된 행위
- 라. 그 밖에 정보주체의 이익을 침해하거나 건전한 전송요구권 생태계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I. 규제 필요성 및 대안선택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23.3.14)으로 도입된 개인정보의 전송요구권에 따라 정보주체의 전송요구권을 안정적이고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전송받은 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자를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으로 지정할 필요
- 동 개정안은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지정에 필요한 세부 지정요건을 구체화하고, 지정·재지정 절차, 유효기간, 취소절차, 행위규칙 등 전문기관의 지정·운영 등에 필요한 절차 및 기준을 구체화하여 정하는 것임

2. 규제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내용 및 선택 근거

○ 대안의 내용

-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세부 지정요건, 지정·재지정 절차, 변경 심사, 유효기간, 취소 사유, 취소 절차, 유효기간 등을 구체화하여 규정
-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이 전송받은 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고 업무 수행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침해하지 않도록 행위규칙 규정

○ 대안의 선택 및 근거

- 정보주체의 전송요구권을 안정적이고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전송받은 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적합한 역량을 보유한 자가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아 업무를 수행하도록 필요한 기준 및 절차를 구체화하여 규정할 필요
- ※ 기존 금융·공공 분야도 전송받는 정보의 안전한 처리 및 건전한 데이터 생태계 조성을 위해 전송받은 정보를 활용하는 정보수신자가 일정 수준 이상의 시설 및 기술, 보호체계 등을 갖추도록 요구하고 있음

- 지정·재지정 절차, 변경심사, 유효기간, 취소 사유, 취소 절차 등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기준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마련함으로써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사업자들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이해관계자명	일시·장소·방법	조치결과
마이데이터 협의회 (부처·산업·학계·법조계)	○ 전송요구권 하위법령 등 제도 세부기준안 의견청취(3.8)	필요사항 시행령안 반영
마이데이터 실무협의체 (의료·통신·유통 분야 산업계)	○ 제도 관련 의견청취 (‘23.11월~’24.3월)	필요사항 시행령안 반영

3. 규제목표

-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보호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사업자가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으로 지정받도록 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오남용 및 침해로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구현

II. 규제의 적정성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을 통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실효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자를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으로 지정할 필요
- 또한 전문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기업·기관의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정 절차 및 취소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
- 상기의 사항을 모두 고려할 때 목적 및 수단간 비례적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보임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기술	경쟁	중기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 경쟁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경쟁영향평가 점검항목	해당 여부
(A) 사업자의 수 또는 범위 제한	해당없음
(B) 사업자의 경쟁능력 제한	해당없음
(C) 사업자의 경쟁유인 감소	해당없음
(D)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선택과 정보의 제한	해당없음

- 중소기업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 규제 차등화 예비분석 결과표

① 규제 영역		해당없음
② 규제 방식		해당없음
③ 예비분석모델		해당없음
	판단 근거	해당없음
④ 대상 업종		해당없음
⑤ 예비분석내용		해당없음
⑥ 차등화적용 여부		해당없음

o 기타 고려사항

- 고용친화적 규제설계

해당사항 없음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해당사항 없음

- 일몰설정 여부

해당사항 없음

- 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 여부

분류	적용여부	적용내용/미적용사유
포괄적 개념 정의	미적용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가 갖춰야 하는 지정요건의 세부기준, 지정·재지정 절차, 취소절차 및 취소사유 관련 구체적 기준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포괄적 개념 정의가 적합하지 않음
유연한 분류 체계	미적용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가 갖춰야 하는 지정요건의 세부기준, 지정·재지정 절차, 취소절차 및 취소사유 관련 구체적 기준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유연한 분류 체계가 적합하지 않음
네거티브 리스트	미적용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가 갖춰야 하는 지정요건의 세부기준, 지정·재지정 절차, 취소절차 및 취소사유 관련 구체적 기준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네거티브 리스트 규제가 적합하지 않음
사후 평가관리	미적용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가 갖춰야 하는 지정요건의 세부기준, 지정·재지정 절차, 취소절차 및 취소사유 관련 구체적 기준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사후 평가 관리가 적합하지 않음
규제 샌드박스	미적용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가 갖춰야 하는 지정요건의 세부기준, 지정·재지정 절차, 취소절차 및 취소사유 관련 구체적 기준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규제 샌드박스가 적합하지 않음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o 해외사례

① 유럽연합(EU)

- 유럽 「개인정보 보호법(GDPR)」은 제20조(Right to data portability)를 통해 정보주체가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 받을 권리인 개인정보 이동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기술적으로 가능한 경우 제3자에게 직접 전송되도록 할 권리도 포함

제20조 개인정보 이동권

1. 개인정보주체는 컨트롤러에게 제공한 본인에 관련된 개인정보를 체계적이고, 통상적으로 사용되며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식으로 수령할 권리가 있으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컨트롤러로부터 방해 받지 않고 다른 컨트롤러에게 해당 개인정보를 이동할 권리를 가진다.
(a) 처리가 제6조(1)의 (a)호나 제9조(2)의 (a)호에 따른 동의나 제6조(1)의 (b)호에 따른 계약을 근거로 하는 경우
(b) 처리가 자동화된 수단으로 시행되는 경우
2. 제1항에 따른 본인의 개인정보 이동권을 행사하는 데 있어, 개인정보주체는 기술적으로 가능한 경우 해당 개인정보를 한 컨트롤러에서 다른 컨트롤러로 직접 이전할 권리를 가진다.
3. 본 조 제1항에 규정된 권리의 행사는 제17조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 해당 권리는 공익을 위해서 또는 컨트롤러에게 부여된 공식권한을 행사하여 이루어지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처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4. 제1항에 규정된 권리는 다른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

② 미국

- o 미국은 에너지, 건강(의료), 교육 분야의 개인정보를 내려받아 직접 활용하거나 공유할 수 있도록 '스마트 공시' 제도를 추진
 - ※ 스마트 공시란 복잡한 데이터를 표준화하고, 기계 판독이 가능한 파일로 만들어 사용자의 의사 결정에 도움이 되도록 공시하는 것을 말함
- o 또한, 미국 캘리포니아 프라이버시 보호법(CCPA)에서 소비자가 개인정보를 전자적 방식으로 제공 받을 권리를 규정
 - 사업자는 제공을 요구한 자가 정당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인지 확인하기 위한 인증(authentication)을 하여야 하며, 소비자가 다른 곳에 이전하여 쉽게 사용할 수 있는 형식으로 제공하여야 함

관련 국제기준	일치여부	불일치 사유(불일치 시에 한함)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 타법 사례

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개인신용정보의 전송요구)

- 개인신용정보주체가 신용정보제공·이용자등에 대하여 본인의 신용정보를 본인,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개인신용평가회사 등에 제공할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

제33조의2(개인신용정보의 전송요구) ① 개인인 신용정보주체는 신용정보제공·이용자등에 대하여 그가 보유하고 있는 본인에 관한 개인신용정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전송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1. 해당 신용정보주체 본인
2.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정보제공·이용자
4. 개인신용평가회사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자와 유사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라 개인인 신용정보주체가 전송을 요구할 수 있는 본인에 관한 개인신용정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해당 신용정보주체(법령 등에 따라 그 신용정보주체의 신용정보를 처리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와 신용정보제공·이용자등 사이에서 처리된 신용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일 것
 - 가. 신용정보제공·이용자등이 신용정보주체로부터 수집한 정보
 - 나. 신용정보주체가 신용정보제공·이용자등에게 제공한 정보
 - 다. 신용정보주체와 신용정보제공·이용자등 간의 권리·의무 관계에서 생성된 정보
2.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로 처리된 신용정보일 것
3. 신용정보제공·이용자등이 개인신용정보를 기초로 별도로 생성하거나 가공한 신용정보가 아닐 것

③ 제1항에 따라 본인으로부터 개인신용정보의 전송요구를 받은 신용정보제공·이용자등은 제32조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의 관련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체 없이 본인에 관한 개인신용정보를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로 처리가 가능한 형태로 전송하여야 한다.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2.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3. 「지방세기본법」 제86조

4.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규정과 유사한 규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의 관련 규정

- ④ 제1항에 따라 신용정보주체 본인이 개인신용정보의 전송을 요구하는 경우 신용정보제공·이용자등에 대하여 해당 개인신용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같은 내역의 개인신용정보를 전송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 ⑤ 개인인 신용정보주체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제1항에 따른 전송요구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특정하여 전자문서나 그 밖에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 1. 신용정보제공·이용자등으로서 전송요구를 받는 자
 - 2. 전송을 요구하는 개인신용정보
 - 3. 전송요구에 따라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
 - 4. 정기적인 전송을 요구하는지 여부 및 요구하는 경우 그 주기
-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과 유사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⑥ 제3항에 따라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한 신용정보제공·이용자등은 제32조제7항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의 관련 규정에도 불구하고 개인신용정보의 전송 사실을 해당 신용정보주체 본인에게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2
 - 2. 그 밖에 개인신용정보의 처리에 관한 규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의 관련 규정
- ⑦ 개인인 신용정보주체는 제1항에 따른 전송요구를 철회할 수 있다.
- ⑧ 제1항에 따라 본인으로부터 개인신용정보의 전송요구를 받은 신용정보제공·이용자등은 신용정보주체의 본인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전송요구를 거절하거나 전송을 정지·중단할 수 있다.
- ⑨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전송요구의 방법, 제3항에 따른 전송의 기한 및 방법, 제7항에 따른 전송요구 철회의 방법, 제8항에 따른 거절이나 정지·중단의 방법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신용정보업 등의 허가) ①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신용정보업, 본인신용정보관리업, 채권추심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신용정보업, 본인신용정보관리업 또는 채권추심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신용정보업, 본인신용정보관리업 및 채권추심업을 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22조의9(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의 행위규칙) ①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개인인 신용정보주체에게 개인신용정보의 전송요구를 강요하거나 부당하게 유도하는 행위
 - 2. 그 밖에 신용정보주체 보호 또는 건전한 신용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 ②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는 제11조제6항에 따른 업무 및 제11조의2제6항제3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개인인 신용정보주체와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한 내부관리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는 다음 각 호의 수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으로 사용·보관함으로써 신용정보주체에게 교부할 신용정보를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정보제공·이용자나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또는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이하 이 조 및 제33조의2에서 “신용정보제공·이용자등”이라 한다)가 선정하여 사용·관리하는 신용정보주체 본인에 관한 수단으로서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접근매체

2. 본인임을 확인 받는 수단으로서 본인의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 제시 또는 전화, 인터넷 홈페이지의 이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④ 신용정보제공·이용자등은 개인인 신용정보주체가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에 본인에 관한 개인신용정보의 전송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정보제공의 안전성과 신뢰성이 보장될 수 있는 방식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으로 해당 개인인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를 그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에 직접 전송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신용정보제공·이용자등의 규모, 금융거래 등 상거래의 빈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 신용정보제공·이용자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계기관을 통하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에 개인신용정보를 전송할 수 있다.

⑥ 신용정보제공·이용자등은 제33조의2제4항에 따라 개인신용정보를 정기적으로 전송할 경우에는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비용을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가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⑦ 제4항 및 제5항의 전송의 절차·방법, 제6항에 따른 비용의 산정기준 등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전자정부법」 제43조의2(정보주체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의 제공요구권)

- 정보주체가 본인에 관한 증명서류 또는 구비서류 등의 행정정보를 본인 또는 본인이 지정하는 제3자에게 제공할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

제43조의2(정보주체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의 제공요구권) ① 정보주체는 행정기관등이 정보처리능력을 지닌 장치에 의하여 관독이 가능한 형태로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행정기관등의 장으로 하여금 본인에 관한 증명서류 또는 구비서류 등의 행정정보(법원의 재판사무·조정사무 및 그 밖에 이와 관련된 사무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이하 “본인정보”라 한다)를 본인이나 본인이 지정하는 자로서 본인정보를 이용하여 업무(「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따라 처리하는 민원은 제외한다)를 처리하려는 다음 각 호의 자(이하 “제3자”라 한다)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1. 행정기관등

2. 「은행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은행업의 인가를 받은 은행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

② 정보주체가 제1항에 따라 본인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할 때에는 해당 본인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같은 내역의 본인정보를 제공하여 줄 것을 행정기관등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해당 제공 요구를 철회할 수 있다.

- ③ 정보주체가 제1항에 따라 본인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특정하여야 한다.
1. 제공 요구를 받는 행정기관등의 장
 2. 제공 요구하는 본인정보
 3. 제공 요구에 따라 본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4. 정기적인 제공을 요구하는지 여부 및 요구하는 경우 그 주기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과 유사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④ 제1항에 따라 본인정보의 제공 요구를 받은 행정기관등의 장은 다음 각 호의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본인정보를 정보주체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지체 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제4항에 따른 제한 또는 거절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39조
 2.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3. 「건축법」 제32조
 4.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
 5. 「관세법」 제116조
 6.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7. 「부동산등기법」 제109조의2
 8. 「상업등기법」 제21조
 9. 「자동차관리법」 제69조
 10. 「주민등록법」 제30조
 11. 「지방세기본법」 제86조
 12.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규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의 규정
-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정보주체가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본인정보의 종류를 해당 본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행정기관등의 장과 협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 ⑥ 행정기관등의 장이 제1항의 제공 요구에 따라 정보처리능력을 지닌 장치에 의하여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본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 ⑦ 정보주체가 제1항에 따라 본인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이 제공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해당 본인정보가 본인에 관한 것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1. 제10조에 따른 민원인 등의 본인 확인 방법
 2. 행정기관등이 보유하고 있는 지문 등의 생체정보를 이용하는 방법
 3. 「주민등록법」 제35조제2호, 「도로교통법」 제137조제5항 또는 「여권법」 제23조의2 제2항에 따라 신분증명서의 진위를 확인하는 방법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본인정보의 요구방법 및 수수료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III. 규제 의 실효성

1. 규제 의 순응도

○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 동 개정안은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업무 수행을 희망하는 자가 거쳐야 하는 지정 절차 및 기준 등을 구체화 한 것으로, 해당 규제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전문기관 지정을 받을 수 없어 규제 준수 가능성이 높음

2. 규제 의 집행가능성

○ 행정적 집행가능성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기존 인력을 활용하여 집행 가능

○ 재정적 집행가능성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기존 예산을 활용하여 집행 가능

IV.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1. 추진 경과

-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의결('23.2.27) 및 공포('23.3.14)
- 「범정부 마이데이터 추진단*」 출범('23.7.24)
 - * 과기정통부, 복지부, 교육부, 행안부, 금융위 등 관계부처로 구성된 실무추진단(1단 3팀 8개부처)
- 관계부처 합동 「국가 마이데이터 혁신 추진전략」 발표('23.8.17)
- 민관합동 마이데이터 협의회* 신설 및 제1차 회의('23.11.14)
 - * 개인정보위 위원장 주재, 기재부·교육부·과기부·행안부·문체부·산업부·복지부·금융위 등 차관급 공무원(12개 부처), 산업계, 학계·연구계, 법조계, 시민단체 등 총 26명으로 구성

- 부문(의료, 통신, 유통)별 실무협의체 회의 운영('23.12월~)
- 민관합동 마이데이터 협의회 제2차 회의('24.3.8)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24.5.1~'24.6.10)

2. 향후 평가계획

- 개인정보처리자가 동 제도에 대해 인지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산업계, 시민단체 등 관련 참여자의 의견을 수시로 청취하는 등 제도 개선을 위한 모니터링을 병행할 예정

3. 종합결론

- 동 개정안은 전송 정보 관리 및 보호 등에 적합한 역량을 갖춘 자를 개인정보 관리 전문기관으로 지정·관리하여 전송요구권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사항으로, 지정 및 취소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하여 기업·기관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필요함

가. 대안별 분석 비교표

분석기준년도	규제시행년도	분석대상기간 (년)	할인율 (%)	단위
2024	2024	0	4.5	백만원, 현재가치

규제대안1 :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 국민				
정부				
총 합계				
기업순비용			연간균등순비용	

정성분석 내용 및 기타 참고사항

나. 각 대안의 활동별 비용·편익 분석 결과

<규제대안1 :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① 피규제 기업·소상공인 :

☐ 직접비용

(정성)세분류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
활동제목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비용항목	운영
일시적/반복적	반복적
근거설명	○ 동 규제는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을 지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관해 규정한 것으로, 개인정보보호법상 원칙 및 기준을 제대로 준수하는지 여부, 지정기준을 충족하는 기관인지 여부 등 관리·감독을 받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제한적임

☐ 직접편익

(정성)세분류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
활동제목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편익항목	신규 서비스 창출 등
일시적/반복적	반복적
근거설명	○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으로 지정받는 경우, 기존에 확보하기 어려웠던 다양한 산업·분야의 데이터를 정보주체의 의사에 따라 융합하고 새로운 비즈니스를 발굴하여 수익 창출 가능

② 피규제자 이외 일반국민 :

☐ 편익

(정성)세분류	일반국민
활동제목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편익항목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강화, 국민 편의 서비스 확대
일시적/반복적	반복적
근거설명	○ 정보주체는 신뢰할 수 있는 전송체계 및 보호역량을 갖춘 기업·기관을 통해 자신의 전송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어 프라이버시를 보호받을 수 있고, 마이데이터 생태계에 대한 신뢰 형성을 통해 보다 적극적인 권리 행사 가능 ○ 또한,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을 통해 의료·유통·통신 등 다양한 영역에서 개인 맞춤형 서비스를 이용하여 국민 편의성 증진

③정부 :

☐ 편익

(정성)세분류	정부
활동제목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편익항목	사회·복지서비스 확대, 데이터 기반 과학행정 실현
일시적/반복적	반복적
근거설명	○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등 행정·공공기관은 마이데이터를 통해 노인 위급상황 알림, 취약계층 요금감면 등 다양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고령화·재난·복지 등 사회적 난제를 해결하는 데이터 기반 과학행정 실현 가능

< 규제 개요 >

기본 정보	1.규제사무명	결합전문기관 지정 및 관리감독		
	2.규제조문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제29조의2, 제29조의4		
	3.위임법령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3		
	4.유형	강화	5.입법예고	2024.5.1~2024.6.10
규제의 필요성	6.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가명정보 활용 활성화를 위해 결합전문기관 지정 이후 결합실적이 전혀 없는(자격취득 후 3년간) 비활동·무실적 결합전문기관을 정비하기 위한 기준 마련 ○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제66조 제2항 신설)에 따라 공표명령을 결합전문기관 지정 기준에 반영하고, 지정취소되거나 재지정되지 못한 결합전문기관이 곧바로 다시 지정 신청을 할 수 있는 입법 공백을 해소할 필요 ○ 「가명정보의 결합 및 반출 등에 관한 고시」에 자체결합 관리·감독 서류를 ‘분기별’로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에서는 관련 의무를 ‘매년’으로 규정하고 있어 조문 명확화 필요		
	7.규제내용	① 제29조의2 제1항·제4항 ○ 결합전문기관 재지정 시(3년마다) 지난 3년간 결합실적 및 향후 운영계획 등을 검토해 개인정보위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재지정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결합전문기관 지정 기준에 공표명령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을 추가 ○ 결합전문기관 지정 기준에 최근 1년 이내에 지정취소 및 재지정되지 않은 사실이 없을 것을 추가 ② 제29조의4 제2항 ○ 결합전문기관 관리·감독 목적의 서류를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도록 위임 조문 명확화		
	8.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 결합전문기관으로 지정 및 재지정 받고자 하는 자		
	9.도입목표 및 기대효과	○ 결합전문기관 재지정 시(3년마다) 결합실적 및 향후 운영계획 등을 검토해 지정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지정 및 결합전문기관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한 데이터 결합 활성화 유도		
규제의 적정성	10.비용·편익 분석 (정성분석)	○ (비용) 결합전문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지정요건에 부합하는 시설 및 기술 기준 등을 갖추기 위한 투자가 필요하며, 안전한 결합환경 구축·관리를 위한 지속적인 유지 관리비용이 필요		

		－ 또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적합한 능력을 갖춘 자가 결합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심사(서류현장) 등의 절차를 마련·운영하고, 지정요건을 유지하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하기 위한 관리·감독 예산은 필요					
		○ (편익) 결합전문기관 지정·운영을 위한 행정적 부담보다는 결합전문기관 운영으로 담보되는 가명정보의 안전한 활용 및 정보주체의 권익 보호라는 사회적 편익이 보다 중요					
11.영향평가 여부	기술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중기영향평가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기타	12.일물설정 여부 등	대분류	소분류				
		일물설정 예외기준	1. 국제조약 등에 따라 동일하게 적용 되어야 하는 규제		해당		
			2. 국가의 질서 유지 및 국민생명·안전과 직접 관련된 규제		해당		
			3. 사회통념상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규범적 성격의 규제		해당		
		경제규제 여부기준	4. 국민과 기업의 경제활동에 대한 규제		미해당		
			5. 경제활동에 직접영향을 주는 규제		미해당		
		일물설정 세부기준	6. 피규제자의 규제부담이 매우 큰 규제		미해당		
			7. 한시적 목적을 위한 규제이거나 주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규제		미해당		
		일물설정여부		일물조문		연장여부	
		미설정					
		일물유형		일물설정기간		일물주기	
	13. 우선허용 · 사후 규제 적용여부	해당없음					
	14. 비용감축 제	적용여부	비용	편익	연간균등순비용		
		－	－	－	－		
15. 규제정비 계획	해당없음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9조의2(결합전문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 ① 법 제28조의3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이하 “결합전문기관”이라 한다)의 지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9조의2(결합전문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 ① ----- ----- -----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4. 최근 3년 이내에 법 제66조에 따른 공표 내용에 포함된 적이 없을 것	4. ----- <u>따라 공표되거나 공표명령을 받은 사실</u> -----
<신설>	5. <u>최근 1년 이내에 제29조의2제5항에 따른 지정취소 및 제4항 단서에 따라 재지정되지 않은 사실이 없을 것</u>
②·③ (생략)	②·③ (현행과 같음)
④ 결합전문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하며, 보호위원회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결합전문기관이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면 제1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결합전문기관으로 재지정할 수 있다. <단서 신설>	④ ----- ----- ----- ----- ----- ----- ----- -----. <u>다만, 정당한 사유없이 결합·반출 실적이 없거나 현저히 업무수행 실적이 저조한 경우에는 재지정 이후 결합 활성화를 위한 운영계획, 사업수행 의지 등을 검토하여 재지정하지 않을 수 있다.</u>
⑤ ~ ⑧ (생략)	⑤ ~ ⑧ (현행과 같음)

제29조의4(결합전문기관의 관리·감독 등) ① (생략) ② 결합전문기관은 제1항에 따른 관리·감독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u>매년</u> 보호위원회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 3. (생략) ③ (생략)	제29조의4(결합전문기관의 관리·감독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 <u>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u> ----- -----. 1. ~ 3.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	--

I. 규제 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결합전문기관 지정 이후 결합실적이 전혀 없는(자격취득 후 3년간) 비활동·무실적 결합전문기관을 정비하기 위한 근거 마련 필요
 - 지정취소되거나 재지정되지 못한 결합전문기관이 곧바로 다시 지정 신청을 할 수 있는 입법 공백 해소 필요
 - 또한, 법 개정(제66조 제2항 신설)에 따라 공표명령을 결합전문기관 지정 기준에 반영할 필요
- 「가명정보의 결합 및 반출 등에 관한 고시」에서는 자체결합 관리·감독 서류를 '분기별'로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시행령에서는 관련 의무를 '매년'으로 규정하고 있어 조문 명확화 필요

2. 규제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내용 및 선택 근거

○ 대안의 내용

- 결합전문기관 재지정 시(3년마다) 지난 3년간 결합실적 및 향후 운영계획 등을 검토해 개인정보위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재지정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 결합전문기관 지정 기준에 최근 1년 이내에 지정취소 및 재지정되지 않은 사실이 없을 것을 추가
- 결합전문기관 지정 기준에 공표명령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을 추가
- 결합전문기관 관리·감독 목적의 서류를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도록 시행령에 위임 조항 명확화

○ 대안의 선택 및 근거

- 자격취득 후 3년간 결합실적이 전혀 없는 결합전문기관이 관련 업무

수행을 위해 스스로 노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결합전문기관 재지정 시 관련 실적 및 운영계획 등을 함께 검토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근거를 마련

- 지정취소되거나 재지정되지 못한 결합전문기관이 곧바로 다시 지정 신청을 할 수 없도록, 최소 1년 동안은 지정기준 및 향후 계획을 보완한 뒤 재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
- 보호법 개정('23.9.15. 시행)으로 공표명령 규정(제66조 제2항)이 신설됨에 따라 결합전문기관 지정 요건에 관련 사항 추가
- 자체결합 관리·감독 서류의 분기별 제출 근거를 명확히 규정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 시행령 개정안의 입법예고 등을 통해 관계기관 의견수렴 예정

3. 규제목표

- 결합전문기관 재지정 시(3년마다) 결합실적 및 향후 운영계획 등을 검토해 지정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지정 및 결합전문기관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한 데이터 결합 활성화 유도

II. 규제의 적정성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 데이터의 융복합 활용 제고를 위해 비활동·무실적 결합전문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방안 정비 필요
- 기존 결합전문기관은 규제 변경에 따라 기존에 지정받은 인력·시스템 요건, 수행업무 등의 변경이 없으므로 규제에 따른 별도 이행 부담은 없으며, 데이터 융복합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이 관련 업무를 보다 책임감 있게 수행하도록 유도할 수 있음
- 이미 「가명정보의 결합 및 반출 등에 관한 고시」 제12조제3항에 따라 분기별로 제출받고 있는 자체결합 관련 서류와 관련하여 법률의 위임을 명확히 함으로서 규제의 명확성을 높일 수 있음
- 상기의 사항을 모두 고려할 때 목적 및 수단간 비례적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보임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기술	경쟁	중기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 경쟁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경쟁영향평가 점검항목	해당 여부
(A) 사업자의 수 또는 범위 제한	해당없음
(B) 사업자의 경쟁능력 제한	해당없음
(C) 사업자의 경쟁유인 감소	해당없음
(D)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선택과 정보의 제한	해당없음

- 중소기업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 규제 차등화 예비분석 결과표

① 규제 영역	해당없음
② 규제 방식	해당없음
③ 예비분석모델	해당없음
판단 근거	해당없음
④ 대상 업종	해당없음
⑤ 예비분석내용	해당없음
⑥ 차등화적용 여부	해당없음

o 기타 고려사항

- 고용친화적 규제설계

해당사항 없음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해당사항 없음

- 일몰설정 여부

해당사항 없음

- 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 여부

분류	적용여부	적용내용/미적용사유
포괄적 개념 정의	미적용	결합전문기관의 지정 및 관리감독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포괄적 개념 정의가 적합하지 않음
유연한 분류 체계	미적용	결합전문기관의 지정 및 관리감독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유연한 분류 체계가 적합하지 않음
네거티브 리스트	미적용	결합전문기관의 지정 및 관리감독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네거티브 리스트 규제가 적합하지 않음
사후 평가관리	미적용	결합전문기관의 지정 및 관리감독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사후 평가관리가 적합하지 않음
규제 샌드박스	미적용	결합전문기관의 지정 및 관리감독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규제 샌드박스 적용대상 아님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 해외사례

- 해당사항 없음

○ 타법 사례

①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조직은행 허가의 유효기간 등)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조직은행이 허가 갱신 이전 3년간 조직의 채취·저장·처리·수입·보관 또는 분배 실적이 없으면 갱신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음을 규정

제14조(조직은행 허가의 유효기간 등) ① 제13조에 따른 조직은행 허가의 유효기간은 허가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개정 2018. 12. 11.>

② 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계속하여 조직은행을 운영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갱신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8. 12. 11.>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조직은행이 허가 갱신 이전 3년간 조직의 채취·저장·처리·수입·보관 또는 분배 실적이 없으면 갱신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8. 12. 11.>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항에 따른 갱신허가 신청을 받은 날부터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갱신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2. 11.>

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갱신허가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갱신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8. 12. 11.>

⑥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갱신허가의 기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Ⅲ. 규제 의 실효성

1. 규제 의 순응도

○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 기존 결합전문기관 수행 업무와 관련하여, 자격 취득 3년 이후 비 활동·무실적 기관 등 최소한의 업무를 수행하였는지 여부를 검토하기 위한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으로, 법 준수에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됨

2. 규제 의 집행가능성

○ 행정적 집행가능성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기존 인력을 활용하여 집행 가능

○ 재정적 집행가능성

- 별도의 재정이 소요되지 않음

IV.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1. 추진 경과

- 결합전문기관 실무협의회('23.1.6., '23.8.10.)
-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의결('23.2.27) 및 공포('23.3.14)
- 관계부처 합동 「가명정보 활용 확대방안」 발표('23.7.21.)
- 가명정보 활용 활성화 정책 설명회('24.2.27.)
- 가명정보 활용사례 성과 발표회('24.3.8.)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마련(~'24.3월)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위원회 보고('24.3.27)
- 입법예고('24.5.1 ~ '24.6.10)

2. 향후 평가계획

- 결합전문기관 및 결합전문기관 지정에 관심 있는 자가 동 제도에 대해 인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공공기관·학계·산업계 등 관련 참여자의 의견을 수시로 청취하는 등 제도 개선을 위한 모니터링을 병행할 예정

3. 종합결론

- 동 개정안은 결합전문기관의 지정 및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에 대한 기준을 정비함으로써 데이터의 융복합 활용을 제고하되, 안전한 결합을 위해 최소한의 안전성 확보 방안도 함께 고려한 것이므로 개정 필요

가. 대안별 분석 비교표

분석기준년도	규제시행년도	분석대상기간 (년)	할인율 (%)	단위
2024	2024	0	4.5	백만원, 현재가치

규제대안1 :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 국민				
정부				
총 합계				
기업순비용			연간균등순비용	

정성분석 내용 및 기타 참고사항

나. 각 대안의 활동별 비용·편익 분석 결과

<규제대안1 : 결합전문기관 지정 및 관리감독>

① 피규제 기업·소상공인 :

☐ 직접비용

(정성)세분류	결합전문기관으로 지정 및 재지정 받으려는 자
활동제목	결합전문기관 지정 및 관리감독
비용항목	설비/운영
일시적/반복적	반복적
근거설명	○ 기존 결합전문기관은 규제 변경에 따라 기존에 지정받은 인력·시스템 요건, 수행업무 등을 변경할 필요 없으나, 결합 관련 업무 수행을 위해 결합률 제고 방안 강구 등 스스로 노력하기 위한 비용이 발생 ○ 다만, 결합전문기관으로 지정받는 경우, 결합업무 수행에 따른 수수료를 결합정보 이용자에 부과하는 등 설비구축에 소요된 비용을 회수 가능

☐ 편익

(정성)세분류	결합전문기관으로 지정 및 재지정 받으려는 자
활동제목	결합전문기관 지정 및 관리감독
편익항목	신규 서비스 창출 등
일시적/반복적	반복적
근거설명	○ 결합전문기관으로 지정·재지정받는 경우 의료·유통·통신 등 광범위한 분야의 데이터를 결합할 수 있으며, 이를 활용하여 공공기관은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고, 우리 기업들은 비즈니스 모델 개발 가능 ○ 특히, 결합전문기관이 관련 결합업무 수행을 보다 책임감 있게 수행하도록 유도하여 데이터 융복합 활성화에 기여함으로써 새로운 데이터 기반의 행정 및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 ○ 법령에서 정한 결합전문기관 지정요건을 사전에 충족하면서 기업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기술수준, 전문성 및 안전성 확보조치 수준 제고 및 이용자의 신뢰 확보

②피규제자 이외 기업·소상공인 :

☐ 편익

(정성)세분류	결합정보 이용자
활동제 목	결합전문기관 지정 및 관리감독
편익항목	안전한 데이터 결합 등
일시적/반복적	반복적
근거설명	○ 결합전문기관을 통해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해 서로 다른 개인정보처리자 간의 가명정보 결합을 할 수 있음 ○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결합전문기관이 결합을 수행함으로써 결합정보 이용자는 원하는 때에 안전하고 전문적으로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해 가명정보를 결합하고 활용할 수 있음

③피규제자 이외 일반국민 :

☐ 편익

(정성)세분류	일반국민
활동제 목	결합전문기관 지정 및 관리감독
편익항목	정보주체의 권익 보호
일시적/반복적	반복적
근거설명	○ 결합전문기관이 결합하는 가명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에 해당하므로, 결합전문기관의 안전한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국민 신뢰 확보가 필수적 ○ 가명정보를 안전하고 전문적으로 결합할 능력을 갖춘 결합전문기관의 지정·운영으로 담보되는 국민인 정보주체의 권익 보호라는 사회적 편익이 클 것으로 예상

③정부 :

☐ 편익

(정성)세분류	정부
활동제 목	결합전문기관 지정 및 관리감독
편익항목	안전한 가명정보 활용 활성화 및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
일시적/반복적	반복적
근거설명	○ 정부는 신뢰할 수 있는 결합전문기관을 지정함으로써 광범위한 분야에서 개인정보가 처리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한 국민 우려를 해소하고, 안전한 가명정보 활용 활성화 및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지원 가능 ○ 또한, 정부는 과학적 연구 등 목적으로 가명정보 결합을 통해 고령화·재난·복지 등 분야의 사회적 난제를 해결함으로써 데이터 기반 행정 실현 가능